

의안번호	제 28 호
의결연월일	2002. 10. 21

##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사 보고서

##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0. 15.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15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0. 21.

제101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#### 2. 제안설명요지(자치행정과장 : 양명석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·운용하고 있는 소득기금 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
-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,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명 중 “운영”을 “운용”으로 변경
- 융자금 대부이율 연5%를 연3%로 하향조정(안 제5조 제2항)
- 대부신청시 읍·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공동추천 삭제  
(안 제6조 제1항)
- 대부신청시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 사항  
삭제(안 제6조 제2항)

#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장순근)

-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 
융자지원 하는데 있어서 융자금의 대부이율과 연대 보증제도를 개선  
하여 농촌지역의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주민부담을 경감  
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융자금 대부이율 연3%의 하향 및 신청요건 완화로 대부신청자가  
증가할 것으로 보아 엄격한 심사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융자추천도록  
하고 또한 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 
수탁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 및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 
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 개선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 
면밀히 검토하여 실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 
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음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